

의안 번호	제3548호
----------	--------

##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11월 15일 유영숙, 한종우 의원  
나. 상정일자 : 2024년 12월 13일  
다. 의결일자 : 2024년 12월 16일

### 2. 제안이유

-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- 「도로교통법」 개정 이후 현행법과 불일치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화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정비
- 조례 제명 변경(“자동차” → “차”)
  - 띄어쓰기 및 상위법 용어 일치를 위해 용어 변경 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구분 차량 명칭 수정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견인료 신설(별표)

4. 검토의견 : 생략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생략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8. 심사결과 : [원안가결](#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10. 주문사항 : 생략
11. 결과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